

미얀마의 헌법과 대외무역 지원 법제

● 신청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 서론

2011년 3월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의 개혁개방은 정부의 계획된 프로그램 하에 절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즉, 집권 5년을 삼등분하여 각 20개월씩을 정치, 경제, 거버넌스 등 단계별 물결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필요한 개혁을 추진한다. 정치 분야는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 정착을 중심으로 민주화 조치와 인권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분야는 농업 발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등 거시경제개발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한 정부 구성, 관료의 역량 강화 등은 3단계 거버넌스의 개혁 분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신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최우선 과제인 농촌개발과 빈곤 감축을 위해 농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확산을 국가개발의 초석으로 삼는다. 미얀마는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이들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빈곤층으로서 농촌개발과 빈곤 감축사업은 상호 연계된다.¹⁾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발전을 통한 부의 분배를 통해 빈곤 감축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1단계 국가개

1) 1983년 이래 30년 만인 2014년 미얀마는 전국적 규모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간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5,150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할 수 없는 환경적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조사는 한계가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계획으로 설정하고, 10대 분야의 ‘빠른 성과’ (Quick Win) 전략을 시행해 왔다.²⁾ 나아가 1 단계 국가개발계획의 외연 확장과 내적 심화를 위해 2030년까지 종합국가개발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³⁾ 두 계획 모두 ‘인간 중심의 발전’을 주요 테제로 설정하여 국민 생활의 지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 각 분야의 개혁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정전협정은 연내에 완성될 것이 유력하지만,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굿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의 의식구조 전환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복지와 혜택의 확산은 국가의 전환, 즉 정상국가를 향하는 미얀마 정부의 의지를 앞당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미얀마 법령에 규정된 대외무역 촉진과 지원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헌법, 외국인투자법, 경제특구법, 중소기업법 등 경제관련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적했듯이 미얀마는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법령을 도입하고,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법령과 제도 소개와 함께 도입이 시급한 분야의 법과 제도의 수요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헌법에 명시된 경제구조와 원칙

2008년 제정된 신헌법에서 경제관련 조항은 많지 않으나, 그 내용에만 집중할 경우 상당히 독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전 군사정부의 경제적 실패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2) 대통령의 자문단이 조직한 미얀마자원발전연구소(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MDRI)가 발표한 경제 및 사회개혁 체제(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FESR)로서 2012-2015년까지 정치개혁, 경제사회개혁, 공공행정개혁, 민간부문개혁 등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빈곤 감소를 위한 10대 개혁 우선 분야를 추진했다.

3) 종합국가개발계획(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NCDP)과 미얀마 종합개발비전(Myanmar 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 MCDV)으로 후자는 전자를 학술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전자는 여전히 초안 작성 중에 있으나, 단기 국가개발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 의도가 헌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실시와 이로 인한 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또한 신정부는 구성성분 상 군사정부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자발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통치집단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시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헌법 조항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고자 군사정부에 들어 국가적 상황에 따라 민주적 다당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⁴⁾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헌법 제35조와 제36조는 신정부의 경제관을 전시한다. 먼저 제35조는 ‘연방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 system)이다. 이 조항은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실시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동시에 구체제의 경제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시장경제체제는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와의 의미상으로 같으나 후자를 사용하는데 지양해야 한다.

미얀마 관료, 정치인, 특히 군인들에게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유사한 용어로 간주된다. 그들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내세운 영국에 의해 미얀마가 식민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국주의로 보고 있으며, 미얀마가 자본주의를 선택하면 제국주의의 전형이 되거나 또 다른 제국주의자들에게 최소한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위협의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망상은 현재에도 유효한데, 특정 국가가 미얀마에 독점 투자체제를 갖출 경우 경제적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향하지만,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는 역사적 특수성이 경제이념에도 자리한다.

제36조 (d)항은 “연방은 기업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제36조 (e)항은 “연방은 현재 통화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회주의 정권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와 차별화되는 신정부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1964년 당시 군사정권은 경제적 독립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기업을 국유화했다. 즉, 시장경제체제의 현실적 적용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을 국유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군사정부는 1989년 「국영경제기업법」을 도입하여 정부가 고부가가치 12개 산업을 독

4) RUM,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08, p.1.

식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국내 모든 산업을 정부가 관장하기보다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배타적 독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도 정부가 경제행위의 거대한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시기의 관행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원목, 보석, 가스 및 원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36조 (e)항은 과탄 지경의 미얀마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킨 통화폐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1962년 이래 미얀마는 세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유통되는 통화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화폐경제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공통점이 있다. 특히 1987년 암거래상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통화폐지는 당시 통용되는 화폐의 30% 이상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제36조 (a)항 “연방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 지역 기구, 조합, 합작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허용한다”와 제37조 (a)항 “연방은 연방 내 천연자원, 토지, 물과 공기 등에 대한 전적인 소유자”라는 조항은 상충된다. 전자가 시장경제원칙을 보장한다면, 후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와 대치된다. 그러나 후자는 땅과 물의 소유자라는 국왕의 권위를 현재에 부활시킨 불교왕국의 개념으로서 1947년과 1974년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부(國富)는 국가에 귀속되지만, 실제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다.

Ⅲ. 대외무역 지원체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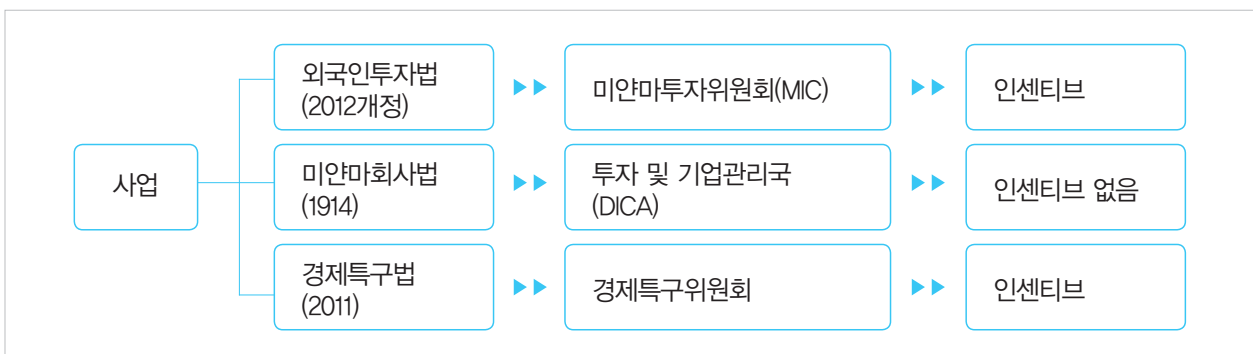
미얀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령체계는 <표1>과 같다. 그 중 미얀마 회사법은 현지 기업의 설립과 폐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외국인투자법과 경제특구법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령이다. 미얀마회사법이 국내기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의

현지 법인화,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기업체 등 사실상 미얀마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도 본 법령에 의한다. 예를 들어 양공에서 성업 중인 한식당과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영세한 봉제업체 등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즉 미얀마는 외국투자법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⁵⁾

미얀마회사법은 제정년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식민시기 당시 제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948년 독립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주요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적원조(ODA) 형태로 본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표1>에도 명기된 것과 같이 외국인투자법과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자를 배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센티브는 각종 세금면제 또는 감면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진일보한 결과이다. 1962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함에 따라 미얀마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대우를 받았다.⁶⁾ 즉, 미얀마 정부가 원치않는 외국기업의 대 미얀마 투자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함으로써 투자 자체에 의욕을 꺾는 행위가 일반적이었다. 경제 논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미얀마 정부의 정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발전은 불가능한 이상이었다.

<표 1> 미얀마에서 사업 추진 및 진행 형태



※ 자료: Malar Myo Nyunt(2015).

5) 한국법제연구원, 「아세안투자법령 해설서 II」, 2013, 158면.

6) 1962년부터 1988년까지 미얀마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독일 고철회사 프리츠베르너(Friz Werner)가 유일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의 관행은 잔존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 정부는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인접 도로망, 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 최소한의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는다. 광물 개발의 경우에도 탐사 비용을 투자 희망기업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두었다. 베트남을 본보기로 하여 미얀마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투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여기에 관료들은 ‘커피값’, ‘용돈’이라는 명분으로 지대추구를 하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표2>와 같이 2015년 기준 미얀마 국내 기업의 약 87%는 중소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 의존율이 절대적이다.

<표 2> 미얀마 국내기업 분포(2015)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합계
기업수	5,740	8,471	30,538	44,749
퍼센트	12.83	18.93	68.24	100

※ 자료: Ministry of Industry(2015), <<http://www.smedevelopmentcenter.gov.mm/>>.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킬 법령이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1990년 산업법(민간산업기업법)⁷⁾을 도입하였으나, 이미 사문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타파할 수 없었다. 이에 신정부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의 도입을 5개년 국가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에 2014년 초 중소기업법령 초안을 완성했고, 2015년 4월 중소기업법을 공포했다. 본 법령은 미얀마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미얀마 회사법에서처럼 현지화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7) 제조업부문의 활성화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과급효과 확대 등 주요 목적에 있어서 중소기업법의 모체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은 1988년 도입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 미안마 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희망하던 기업들이 철수 또는 투자를 철회했다. 따라서 본 법령을 바탕으로 한 대 미안마 투자는 크게 위축되었고, 사실상 본 투자 법령은 사문화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법령체계가 허술한 점도 있지만,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법령은 그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중국이 미안마에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령에 의거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개혁의 2단계 물결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들어 본 법령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 총 20장으로 구성된 동 법령은 근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미안마의 재정 및 기술력을 고려하려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현지화하며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미안마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가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및 금지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국가가 주요 산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내재한다. 그 가운데 ① 국내 소수종족들의 전통문화 및 관습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 ② 연방정부의 허가에 따라 정해진 경제지구를 제외한 국경과 다른 나라와 접한 국경선에서 10마일 이내에서 수행되는 외국 투자 사업(외투법 제4조)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조항은 공히 소수 종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자, 다양한 지하 및 천연자원이 산재하는 지역으로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미 국영경제기업법으로 명시했으나, 이 법령을 통해 지하 및 천연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 법령이 통과되기까지 연방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금 요구, 합작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 11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자본 진입의 원천적 차단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장벽을 설치해 두었다. 결국 최소 투자금 상한선은 폐지되었고,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초안을 전면 수정했다(외투법 제9조). 그리고 현지인 기술자와 노동자를 투자 년도에 따라 일정 수준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두었다(외투법 제24조).

이 법령은 외국인인 투자자를 두려워하는 두 가지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헌법 제36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외투기업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미얀마 투자를 꺼리던 이유 중 하나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세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관료들은 다양한 세금을 명분으로 비공식적인 지대추구행위를 했고, 극단적인 경우 투자한 기업이 자발적 폐업 또는 철수를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인습을 타파하고 투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사업 허가기간 동안 충분한 이유없이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사업 계약 종료시 외국자본으로 투자한 자는 그 권리를 투자에 투입한 외국화폐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외투법 제28조~제30조).

둘째,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미얀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모두 국내에서 재투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금번 개정된 투자법에서는 과실송금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외투기업들은 음성적으로 핸드캐리 또는 태국, 싱가포르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송금해 왔기 때문에 운송상의 위험이나 수수료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본 법령에 따라 투자자는 사업 순이익을 비롯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허가한 수익금에 한해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해졌다(외투법 제39조).

다양한 면제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이하 외투법 제27조 요약).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 개시 연도를 포함한 최초 5년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투자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1년 내에 재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제조업에서 생산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이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품과 부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도 면제 혹은 감면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외 토지 임대도 기존 외투법보다 기간이 늘어났고, 정부 및 국영기업 소유 용지와 건물만 가능했던 토지 임대 부문도 민간인 토지와 건물로 확대되었다.

3. 경제특구법

경제특구법은 군사정부의 마지막 경제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평의회 탄쇄(Than

Shwe) 전 의장은 중국 심천항 개발에 큰 관심을 표명했고, 남부 더웨이(Dawei) 지역에 대한 태국의 개발 관심이 연동되면서 2011년 1월 경제특구법이 탄생했다. 외국인투자법이 사업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11개 분야는 배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법령이라면, 경제특구법은 이와 내용과 방식을 달리한다. 즉, 경제특구법은 첨단기술산업, 무역 및 서비스, 인프라 등 주로 2-3차 산업을 주요 육성산업으로 설정하는데(경제특구법 제8조), 이는 제2장 목적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경제특구법 제2장에 따르면, 국가의 산업과 첨단산업 발전, 상품의 가공, 무역 및 서비스업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국제시장에 판매해야 한다(경제특구법 제16조 (a))는 조항에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외국인투자법과 차별화된다.

〈표 3〉 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내용	주요 내용
투자자의무 및 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상품은 국제시장에만 판매해야 함 • 수익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조직에서 규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함 • 가공산업의 경우 면세로 원료, 기계, 장비 등을 수입할 수 있음. 단 기계류 및 자동차 품목은 다음 5년에는 세금의 50% 감면받음
토지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30년 + 30년 + 15년 연장 가능 (대규모 투자 기준)
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5년간 소득세 면제, 두 번째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청 가능. 세 번째 5년간 이익 재투자 시 재투자한 이익에서 기존 수입세율의 50% 감면신청 가능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첫 5년간 수출액의 수입세(Income Tax) 면제 가능함. 두 번째 5년간 정해진 수입세 30%의 절반만 부과함 • 수출품에 대한 상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가능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숙련공, 기술자, 직원 채용시 사업 개시 연도부터 최초 5년까지 최소 25%, 두 번째 5년 만료 시점까지 50%, 세 번째 5년 만료 시점까지 75%의 내국인을 채용해야 함 • 단순노동은 내국인을 채용해야 함
외환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생산과 사업의 운영 기간 내에는 중앙조직에 의해서 결정된 통화에 따라 평가하고 지불할 수 있음 • 투자자 외화로 경제특구 내 또는 해외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음

※ 자료: 경제특구법령(2011.1.27)을 기초로 작성.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과 특권, 고용, 외환송금 등은 외투법과 유사한 구조이다. 특히, 국가경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시장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내국인의 적극적인 고용기회 보장은 외투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015년 현재 경제특구는 더웨, 짜옥푸(Kyauk Phyu), 띠라와(Thilawa) 등 3개 항구 지역이다. 정부는 초기 더웨 심해항구 개발에 집중했으나, 태국 개발업체의 재정난과 남부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띠라와가 급부상했다. 일본의 공격적인 투자와 양공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현정부의 업적을 전시하려는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⁸⁾

향후 미얀마 정부는 중국 국경지역인 무세(Muse), 태국 국경지역인 마워디(Myawaddy) 등 두 지역을 추가로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장기 개발전략에 의거 요충 도시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특구법도 일정 수준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법령은 수출 가공, 항구, 물류 수송 등 항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세와 마워디는 육로 수출입이 집중화된 도시이므로 제품 생산과 수출에 따른 관세제도 정비 등도 필요해 보인다.

4. 중소기업법

앞서 언급했듯이 미얀마의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지배한다. 신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제도를 고안했다. 먼저 2013년 1월 9일, 대통령실 고시 제 2013/11호에 의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와 작업 위원회(Working Committee)가 조직되었다. 주무 중앙부서는 산업부로서 산하에 중소기업발전지원센터(SMEs Development Service Centre)를 개소하고, 하위에 중소기업발전국을 설치했다. 중앙위원회는 경제관련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배석하고, 중소기업 증진과 양성화 등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⁹⁾

8) 띠라와 경제특구 A지역은 일본이 독점 개발 완료했고, 향후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추가 지역은 타 경제특구보다 조기에 개발 및 산업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9) ERIA and RMRUM, Myanmar 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 2013, p.206.

마침내 2015년 4월 9일, 연방의회법 제23호로서 중소기업법이 도입되었다. 총 18장 37조로 구성된 동 법령은 중소기업의 정의와 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기구들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즉, 법령에는 중소기업법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제도와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2장은 동 법령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기술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정보의 용이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내 및 국제시장 접근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국민의 수입과 고용기회 증대, 중소기업 운영의 장애 감소 등이다(중소기업법 제3조).

이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준과 규모는 <표4>와 같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 피고용인이 50인 이상 되지 않거나 투자금이 5억 짜트 이하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사업 형태가 중소기업 을 막론하고 총 6개로만 분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본금 기준도 사업 종류에 따라 명시되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향후 법률의 유 권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표 4> 중소기업법에 따른 기업의 종류

범주	피고용인(명)	자본(백만 짜트)	회전율(백만 짜트)
1. 소기업			
(a)	제조업	50미만	5억 이하
(b)	노동집약적 제조업 (조립)	300미만	5억 이하
(c)	도매업	30미만	10억 미만
(d)	소매업	30미만	5억 미만
(e)	서비스업	30미만	10억 미만
(f)	기타	30미만	5억 미만

범주	피고용인(명)	자본(백만 샌)	회전율(백만 샌)
2. 중기업			
(a)	제조업	51-300미만	500-1000미만
(b)	노동집약적 제조업 (조립)	301-600미만	500-1000미만
(c)	도매업	31-60미만	100-300억 미만
(d)	소매업	31-60미만	50-100억 미만
(e)	서비스업	51-100미만	100-200억 미만
(f)	기타	31-60미만	50-100억 미만

※ 자료: 중소기업법(2015).

동 법령에서 기업(entrepreneur)은 미얀마 시민이 중소 규모로 완전히 운영하고 투자한 사업체를 의미한다(중소기업법 제2조 (C)). 중소기업법의 적용은 미얀마 국내기업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자본의 현지 법인화와 같이 투자 형태의 현지화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반드시 현지인 자본으로만 국한하기 힘들다. 또한 제11장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동 법령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원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⁰⁾ 이를 테면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안, 중소기업인 육성 전문 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기관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체계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은행(SMIDB)이 8.5%대의 이자로 50만 샌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일반 이자율 13%보다 낮지만 내부 심사규정이 까다롭고 이자율 인하로 인한 중앙은행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대출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10) 그러므로 이 법령은 1990년 민간기업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따른다.

한편, 장기 국가개발계획의 학술 연구인 미얀마 종합개발비전(MCDV)에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동 보고서에는 미얀마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① 정부의 재원과 역량, ② 특정 문제의 위급 상황 인지와 추진(crosscutting) 및 해결책 제시, ③ 국제적으로 좋은 관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법령과 제도의 증진, 정보와 서비스 지원의 향상, 용이한 금융 접근, 기술과 혁신능력 향상, 국제시장 접근 향상, 인간개발 강화 등 6대 과제의 수립 필요성을 역설한다.¹¹⁾

IV. 맺음말

1988년 신군부는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외자도입, 산업 발전 등을 통해 미얀마를 발전적 근대국가로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대 미얀마 제재가 현실화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도입된 새로운 경제제도와 법령은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제 신정부는 그들의 선배가 달성하지 못한 시장경제체제의 완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미얀마 속담에 “쿠 예드윈 뚜, 쿠 예지 따웃”(hku yedwin tu, khu yegyí thaut), “좌판 크이야웃”(thwa phan hkayí yaut)이라는 말이 있다. 즉, 방금 판 우물에서는 정수를 기대할 수 없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뜻이다. 지난 5년 간 개혁 프로그램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웃 국가보다 속도나 내용 면에서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된다. 그렇지만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기간이 최소한 50년으로 정상화의 단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미얀마가 도입한 대외무역지원법령과 제도는 현재 수준에서 내용 면에서 일천하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체감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인치(人治)에 익숙한 제도적 관행을 타파하고, 법치(法治)에 사회체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의식적 개혁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헌법, 외국인투자법, 경제특구법, 중소기업법은 모두 신정부의 새로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정부의 경제개혁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11) ERIA and RMRUM, op. cit., p.214.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법령들에 따라 활발한 대내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장 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빙골만연구사업단 연구교수)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아세안투자법령 해설서 II」, 2013.

Aye Aye Win, *SME Development Plan*, SME Service Centre data, 2012.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and RARUM(Respective Ministries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yanmar 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MCDV)*, 2013.

Marlar Myo Nyunt, “Current Investment Environment in Myanmar.”(PPT), 2015.

Ministry of Industry,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Law, 2015, <<http://www.smedevelopmentcenter.gov.mm/>>.

RUM(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Nay Pyi Taw: RUM, 2008.

The Pyidaungsu Hluttaw Law No. 1/2014,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s Law*, 2014.

The Pyidaungsu Hluttaw Law No. 21/2012, *The Foreign Investment Law*, 2012.